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045 발의연월일: 2025. 2. 11.

발 의 자: 김소희・김선교・유용원

이헌승 · 안상훈 · 김예지

김위상 · 최수진 · 이종욱

박덕흠 • 서지영 • 곽규택

김기웅 · 김상훈 · 고동진

서범수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는 배출권거래제가 적정 탄소가격을 형성하는 활성화·안정화된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, 예측가능성과 형평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「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」을 수립한 바 있음('24.12). 이에, 동 기본계획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배출권 할당 기준을 '업체'에서 '사업장' 단위로 변경하고, 유·무상할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지표 중 하나인 '비용발생도'를 '탄소집약도'로 바꾸며, 배출권시장의 수급균형을 위해 유상할당 경매량 조정을통한 규칙 기반의 시장안정화 제도 도입 등 「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」에 포함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고자함.

한편, 하위법령(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

행령」,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」)에 규정된 배출권의 추가할당, 할당취소의 일부사유를 법률로 상향입법하고, 1차계획기간에 한하여 인정했던 조기감축실적과 관련된 구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법령을 현행 제도에 맞게 현행화하는 등 입법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(안 제5조제1항제8호·제12조제2항제2호·제15조·제37조제2호 삭제, 제12조제5항, 제16조제1항, 제17조제1항, 제18조, 제23조제1항 및 제2항).
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.

제1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외의 부분 중 "할당대상업체"를 각각 "할당대상"으로 하며, 같은 항제1호 중 "비용발생도"를 "탄소집약도"로, "업체"를 "경우"로 한다. 제15조를 삭제한다.

제16조제1항제3호 중 "증설"을 "증설, 가동실적의 증가"로 한다.

제17조제1항제3호 중 "가동중지·정지·폐쇄"를 "가동중지·정지·폐쇄, 가동실적의 감소"로 한다.

제18조제3호 중 "배출권 추가 할당"을 "활동"으로 한다.

제23조제1항제2호 중 "단기간에"를 "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의"로, "증가하는"을 "변화하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"100분의 25까지의 추가 할당"을 "활용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에 유상으

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조정 제37조제2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제5조(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 | 제5조(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 |
| 립 등) ①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| 립 등) ① |
|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 | |
| 기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다음 | |
|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 배 | |
| 출권 할당계획(이하"할당계획" | |
| 이라 한다)을 매 계획기간 시작 | |
| 6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 | |
| 1. ~ 7의2. (생 략) | 1. ~ 7의2. (현행과 같음) |
| 8. 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| <u><삭 제></u> |
| 의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 | |
| 9. ~ 11. (생 략) | 9. ~ 11. (현행과 같음) |
| ② ~ ⑤ (생 략) |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|
| 제12조(배출권의 할당) ① (생 | 제12조(배출권의 할당) ① (현행 |
| 략) | 과 같음) |
|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| ② |
|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| |
|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| |
| 1. (생 략) | 1. (현행과 같음) |
| 2. 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| <u><삭 제></u> |
| 3. • 4. (생 략) | 3. • 4. (현행과 같음) |
| 5. <u>할당대상업체</u> 간 배출권 할 | 5. <u>할당대상</u> |
| 당량의 형평성 | |
| 6. ~ 8. (생 략) | 6. ~ 8. (현행과 같음) |

- ③ ④ (생 략)
-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할당대상업체</u>에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수 있다.
- 1. 이 법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<u>비용발생도</u> 및 무역집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 에 속하는 업체

2. (생략)

제15조(조기감축실적의 인정) ①
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가 제
12조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기
전에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은 온실가스 감축량(이하 "조기 감축실적"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조기감축실적을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하거

| ③・④ (현행과 같음) |
|--------------------|
| ⑤ |
| |
| <u>할당대상</u> |
| |
| |
| 1 |
| <u>탄소집약도</u> |
| |
| |
| <u>경우</u> |
| 2. (현행과 같음) |
| <u><삭 제></u> |
| |

나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효과적인 달성과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할당계획에 반영되거나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배출권 수량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.

- 제16조(배출권의 추가 할당) ① 조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수 있다.
 - 1. 2. (생략)
 - 3.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에 사업장 내시설의 신설이나 <u>증설</u>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 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
 - 4. 5. (생략)
 - ② (생략)

제17조(배출권 할당의 취소) ① 제17조

| 세16조(배출권의 추가 할당) ① - |
|----------------------|
| |
| |
| |
| |
| |
|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|
| 3 |
| |
| <u>증설, 가동실</u> |
| <u>적의 증가</u> |
| |
| |
| (-1-3) 1 -1-0 |
| 4. · 5. (현행과 같음) |
| ② (현행과 같음) |
| 세17조(배출권 할당의 취소) ① - |

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 조 및 제16조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 할당된 배출권(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만 해당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.

- 1. 2. (생략)
- 3. 시설의 <u>가동중지·정지·폐</u> <u>쇄</u>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 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

4. ~ 6. (생략)

② ~ ④ (생 략)

제18조(배출권 예비분) 주무관청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정 수량 의 배출권을 배출권 예비분으로 보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배출 권 예비분은 그 용도나 목적 등 에 따라 구분하여 보유할 수 있 다.

- 1. · 2. (생략)
- 3. 제23조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 할

|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|
|----------------------|
| 3 <u>가동중지·정지·폐쇄,</u> |
| 가동실적의 감소 |
| |
| |
| |
| 4. ~ 6. (현행과 같음) |
|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|
| 제18조(배출권 예비분)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|
| 3 |
| 활동 |

당

4. • 5. (생략)

제23조(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) ①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당할 우려가상당히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안정화조치를 할 수 있다.

- 1. (생략)
- 2.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<u>단기간에</u> 거래 량이 크게 <u>증가하는</u>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3. (생략)
- ② 제1항에 따른 시장 안정화조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.
-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 분의 100분의 25까지의 추가 할당
- 2. (생략)

<신 설>

| 4.•5. (현행과 같음) |
|---------------------|
| 제23조(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 |
| 화) ①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1. (현행과 같음) |
| 2 |
| |
| <u>해당 이행연도</u> |
| 의 배출권의 |
| <u>변화하는</u> |
| 3. (현행과 같음) |
| 2 |
| |
| |
| 1.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 |
| 분의 <u>활용</u> |
| |
| 2. (현행과 같음) |
| 3.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 |
| 른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 |

3. (생략)

제37조(실태조사) 주무관청은 다음 각호의 신청이나 처분 등에 관하여 그 사실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할당대상업체, 배출권 거래소, 시장조성자, 배출권거래 중개회사, 검증기관 또는 검증심사원(이하 이 조에서 "실태조사 대상자"라 한다)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할 수 있다. 이 경우 실태조사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따라야 한다.

- 1. (생략)
- 2. 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의 인정
- 3. ~ 7. (생략)

| 에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>의 조정</u> |
| <u>4</u> . (현행 제3호와 같음) |
| 제37조(실태조사)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<u>.</u> |
| 1. (현행과 같음) |
| <u><삭 제></u> |
| |
| 3. ~ 7. (현행과 같음) |